

부산지방법원 2020. 7. 14 선고 2019가단1805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5. 19

판결 선고 2020. 7. 1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,296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 사실

1)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 이 사건 부동산' 이라 한다) 에 관하여 개시 된 임의경매절차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. 9. 4.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. 9.

1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주소지에 관하여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· 수익하고 있었고,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다.

3)피고 가 이 사건부동산을 비워주지 아니 하자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부 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. 1. 10. 강제집행을 하였다.

4)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2019. 9. 4. 부터 2020. 1. 10. 까지 임료의 합계액은 9,296,000원이다. [인정근거] 일부 다툼 없는 사실,갑 1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이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2019 . 9. 4. 부터 2020 . 1. 10. 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· 수익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,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9, 296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바에 따라 2020. 1. 11. 부터 다값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피고를 찾아와 이 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, 지금에 와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

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피고와 이 사시기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다가 위협의 가 결렬되자 결국 원고가 이 사건소를 제기하는한편 부동산인도 명령을 받아 강제 집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바, 원고 가 위기간동안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 · 수익을 허락하였다거나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,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김지현

별지

1)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2020. 1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, 2020. 1. 11. 이 소장 부분 송달일보다 뒤의 날짜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, 원고가 2020. 1. 11.부터 연 12%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.